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중랑천 초안산 앞 보행교량 설치공사]

- 점검일시 : 2018.01.17 (수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한종수, 박수엽

○ 추락재해 예방(토목부)

- 현장 내 활동시 안전모를 필히 착용하여야 하나 크롤러 크레인(400ton) 철거 작업현장은 크레일러 장비기사 및 철거 작업관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있으니 현장관리 철저 바람, 현장에 진입하여 장비외부에서 활동하는 장비조종원 및 공사관계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 할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바람.(NO.1)
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



○ 추락재해 예방(토목부)

- 교량 상판 연석작업 중으로 시점부 추락방지시설(난간 등)이 작업자에 의해 해체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난간 설치 후 작업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.(NO.2)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,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



○ 추락재해 예방(토목부)

- 보행교량 상판에 임시로 설치한 추락방지시설 (PP로프로 설치)은 견고한 난간을 외부 방향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, 제23조(가설통로의 구조)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1(안전난간)



○ 추락재해 예방(토목부)

- 크레인 작업을 위해 설치된 가축도 주변의 안전시설은 견고하게 보완하고 시민들이 다니는 산책로가 옆에 있음을 감안하여 접근 및 추락위험 안전표지를 설치하여 관리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토목부)

- 현장에서 중량물 인양 작업시 샤클등을 이용하여 결속을 철저히 하고, 2점지지 이상 종류, 규격, 형상별 인양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바람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23 (양중작업의 낙하방지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





○ 중량물취급 안전(토목부)

- 크레인 철거구간에 사용중인 몸체가 손상된 슬링벨트는 현장에서 반출하기 바라며, 사용전, 후 점검을 통해 관리하기 바람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31(벨트슬링)



○ 가설비계 안전(토목부)

- 교량 출입을 위해 설치한 계단이 통행 시 흔들림이 있으니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하기 바람,
- 중간부분에 발판이 누락된 곳은 발판을 설치하기 바람.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(가설 통로의 구조), 제24조(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)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2(작업발판 및 계단)



○ 기타 안전관리(토목부)

- 시점부 공사장 출입구 일부 안전휀스로 설치되어 있어 주민의 공사장 출입 시 공사장내 안전이 우려되니 주민 출입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.

